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4 | 2024.12.09 (2024.12.02~12.0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최신 동향,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수요·공급기관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기업들이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을 도입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12.10.14:00 개최될 예정입니다.

<법사위>, <과방위>, <산자위> 등에서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고, <정무위>, <교육위>, <농해수위> 등에서는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공정거래위원회)..... 8
-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국가유산청)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18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4인) 19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1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20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의원 등 10인) 2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2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5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2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8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9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4인)	3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31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의원 등 10인)	3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2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3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3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3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35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35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	3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3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3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바로가기](#)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2 (2024년 11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3 (2024년 12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가능한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사례를 제시
-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4-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됨
- 동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였음

② 주요 공동행위 유형과 판단기준

-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함.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이러한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③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판단기준

-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경영간섭 등),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될 우려가 있음

④ 유형별 사례 기반 실질적 가이드라인

-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 외에도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선별한 대표사례(가상사례 포함)를 예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7~8월) 및 공개의견청취(11월)를 실시하여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

- 기업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도입 수준을 진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 기업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도입 시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 기대

2024-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최신 동향,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수요·공급기관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 기업들이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을 도입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Zero Trust)는 정보체계 등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 연결망이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여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새로운 보안 개념임. 기존의 보안 모형은 연결망의 내·외부를 구분하여 내부자에게 암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경계기반’ 보안 방식이었지만,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 재택·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기존 보안 모형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보안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

이에 2023년 7월 과기정통부는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하여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 원칙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지침(가이드라인) 1.0에서 제시한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을 실제 기업환경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국산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의 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음

이번에 발표하는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은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인식 제고를 넘어 실제 기업에서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 등 해외 최신 정책 문서(전략, 지침 등)를 참고하고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기존 실증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론을 보강하는 등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모형 도입·적용을 희망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하였음

특히, 각 기업이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을 도입하고자 할 때 현재 수준을 진단·분석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구체화된 ‘성숙도 모형’을 정의하였으며, 기업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대한 세부역량과 성숙도 수준별 특징을 설명하고 평가를 위한 점검표 제공 및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단순히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의 기술적 방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 고려사항, 조직의 역할, 단계별 이행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및 예시를 포함하여 도입을 위한 준비부터 실제 운영·정착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과기정통부는 본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각 산업 분야의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보안 모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무 진행의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 완화
-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 개선
- 해외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및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2024-12-05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힘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작밀착형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였음.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을 완화함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준비하였음.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을 개선하고,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디지털 의약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정비함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기업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 관련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마련하였음.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화획득실적 등 요건을 폐지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를 자유화하겠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단축(3년→2년)하여 신규 기업투자에 걸림돌을 해소하겠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회의 범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	---	------------------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	--------------------------------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구나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파악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의2 및 제14조)
- ③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 ④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 (제36조제1항 및 제45조)
- 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제36조의3 신설)
- ⑥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고, ‘재생시행계획의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5-12-04 시행 예정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12-04 시행 예정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06-04 시행 예정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분석·파악 및 교통안전 강화를 도모함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04 시행 예정

물가상승 등 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로 판매할 수 있는 재화·용역 가격의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 온 경우 종전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후원방문판매 판매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05. ~2025.01.14.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안 별표1)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문의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전화: 044-201-7069, 팩스: 044-201-7070\)](tel:044-201-7069)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05. ~2025.01.14.
-----	--------------------	-----------------------------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안 별표10)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 (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 문의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전화: 044-201-7069, 팩스: 044-201-707\)](tel:044-201-7069)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05. ~2025.01.14.
-------	--------------------------------------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023.6.21)에 따라 복개된 우수시설에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 (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 그 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② 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 (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

③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 (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

④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 (안 제22조제2호)

-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⑤ 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 (안 제32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7.18)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

⑥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 (안 제58조제1항제3호)

-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⑦ 우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19조제2호)

- 우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우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

⑧ 우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우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전화: 044-201-3722, 팩스: 044-201-565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2.06.
~2025.01.15.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부여 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모듈러 주택 등은 구조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부품 등의 교체·변경이 용이하여 「주택법」상 장수명 주택의 특징(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이 모듈러 등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증 취득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철근콘크리트 위주로만 규정된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철골 구조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모듈러 등 OSC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취득 및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성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제1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http://www.mol.go.kr)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12.06.
~2025.01.02.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http://www.kci.go.kr) (전화: 042-481-4994, 팩스: 042-481-310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 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

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은 국가안전법에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명문으로 규정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 (안 제98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임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32조)

법제사법위원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4인)

2024-12-06 발의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증권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의 방식을 인정하므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함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정 사건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등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임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회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2024-12-06 발의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2024-12-06 발의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등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 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2024-12-03 발의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기업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가 수준이 낮았던 분할과 관련해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회사 일반주주가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2

①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 결정 (안 제165조의4제2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이사회 책임 (안 제165조의4제3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외부평가 (안 제165조의4제4항)

-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함

④ 합병 등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안 제165조의5제3항)

-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합병 등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⑤ 물적분할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 배정 (안 제165조의7제4항)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목적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서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회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규모 약 102조원 중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약 37.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약 88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약 2.9만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의 익명성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제재 및 근절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024-12-05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등)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024-12-05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024-12-02 발의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年 200조원을 넘어 GDP의 9.3%를 차지하고, 참가업체도 57만여 개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함. 최근 공공조달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넘어, 산업정책, 기술혁신, 취약계층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도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 관한 일반법에 전략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공공조달의 규모 증가와 전략적 활용의 보편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술혁신, 기후 · 환경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조달법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에 관한 것이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 등 조달청의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12-02 발의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 제85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 (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024-12-03 발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안 제77조의4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024-12-0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2024-12-02 발의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②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7조)
- ③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8조 및 제9조)
- ④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 (안 제10조)
- ⑤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음 (안 제11조)
- ⑥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12-03 제출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안 제35조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 (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하여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사실을 적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업체 명의로 불법 수출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행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 (안 제9조제1항제4호)
- ③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 (안 제24조제1항)
- ④ 각 시·도지사로부터 하역금 태풍, 풍랑 등 기상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의1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7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
인)

2024-12-02 발의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 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4인)

2024-12-03 발의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필수 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력 첨단산업으로 자리하였으나, 2019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세액공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산업 위축이 우려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6조)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 ④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 (안 제15조)
- 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⑥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 ⑦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28조)
- ⑧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 (안 제31조)
- 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3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및 IT 선두국가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③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28조)
- ④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 4 신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 신설)
- ③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 2 및 제16조)
- ④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5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04 제출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2024-12-02 발의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12-03 발의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2024-12-02 발의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12-02 발의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2-04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자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024-12-04 발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10(화)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2/9(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2/9(월) 14:00	- 법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2/9(월) 10:00	- 현안 질의
교육위	전체회의	12/9(월) 10:00	- 현안 질의,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12/9(월) 09: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9(월) 10:30	- 법안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12/13(금) 10:00	- 현안 질의
국토위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12/9(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10(화) 10: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09(월) 10:00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김종민·이성권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09(월) 10:00	기후변화와 민생, 기후 지도와 농작물 생활환경 변화	조지연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09(월) 14:00	무분별한 의료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안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0(화) 10:00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여기구·이상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0(화) 10:00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차지호·조정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11(수) 13:30	에너지AI 정책방향과 과제	조승래·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2(목) 14:00	연안국토 보전을 위한 침식대응 정책 토론회	임미애·박덕흠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12(목) 15:00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미화·김예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13(금) 14:00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12/9(월)	「THE 현안」 제37호(2024-37호) 발간	국회도서관	
	12/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2호(2024-24호) 발간		
	12/11(수)	「Data&Law」 2024-13호 발간		
	12/11(수)	「금주의 서평」 제707호(2024-48호) 발간		
	12/12(목)	서평집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 발간		
	12/9(월)	「NABO Focus」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10(화)	「NABO Focus」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발간		
	12/9(월)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12/10(화)	‘기술료 제도의 법령용어 관련 쟁점과 정비방안’(이슈와 논점) 발간		
	12/10(화)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슈와 논점)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2(월)	「THE 현안」 제36호(2024-36호)	국회도서관	
	12/4(수)	「금주의 서평」 제706호(2024-47호)		
	12/5(목)	「현안, 외국에선?」 제96호(2024-24호)		
	12/2(월)	「Futures Brief」 제24-10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02(월)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2 (2024년 11월)
12/02(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2/06(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3 (2024년 12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